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4. 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3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2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4월 4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택

가. 제안이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료 안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안 제7조)
-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및 제10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마포구는 대중교통의 요충지인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적은 임대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인디밴드로 대표되는 젊은 트렌드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발전하였으나,
- 유명 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여 주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마포구 전지역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여 실제 지역문화를 이끌어 발전시킨 예술인과 상인들은 밀려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른 현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는 것이며,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이해관계가 형성된 임대인, 임차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번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홍보해야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